

창업친화적 학사제도 운영 규정

□ 제정 : 2020. 7. 1.

제 1 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수원과학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에서 시행하는 창업친화적 학사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용어의 정의) ① “창업친화적 학사제도”라 함은 창업 준비활동 및 실제 창업 활동 등을 학사제도 내의 활동으로 인정하여 학생의 창업을 장려하고 창업으로 인한 학업의 단절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.

② “창업 휴학”이라 함은 휴학사유가 창업으로 인정되는 경우 창업 휴학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.

③ “창업대체학점”이라 함은 학생들의 창업 준비활동을 통해 학습목표의 달성이 가능한 경우 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말한다.

④ “창업자”라 함은 창업기업의 대표로서, 사업자등록증에 대표자로 명시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.

⑤ “예비창업자”라 함은 6개월 이내에 본인명의의 사업자 등록증을 낼 예정인 자를 말한다.

제3조(담당) ① 창업친화적 학사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은 창업교육센터(이하 “주관부서”라 한다)에서 담당한다.

② 창업친화적 학사제도 운영에 대한 중요사항은 창업교육센터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에서 심의한다.

③ 위원회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.

제 2 장 창업 휴학

제4조(창업휴학 인정) ① 창업 휴학은 학업과의 연계성 유지를 위해 원칙적으로 학생의 전공과 관련된 분야로 한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관련 전공 분야의 창업이 아니더라도 창업 휴학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허용한다.

② 위원회는 창업 휴학의 조건이 충족되더라도 목적과 부합하지 않을 경우, 휴학을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제5조(창업휴학 적용 제외대상 업종)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의 창업은 창업 휴학을 허용하지 않는다.

1. 일반유희주점업
2. 무도유희주점업
3.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

제6조(창업 휴학 신청 자격) ① 학생 창업 휴학은 신청 학생이 창업기업의 대표(공동대표까지 포함)로 되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며, 다음 각호의 자격 조건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충족할 시 창업 휴학을 신청할 수 있다.

1. 1학기 이상을 이수하고, 대학에서 제공하는 창업 관련 교과목을 1개 이상 이수한 학생
2. 주관부서에서 진행하는 창업동아리 활동을 6개월 이상 한 학생
3. 창업 관련 교과목 이수와 창업동아리 활동을 수행하지 않은 학생의 경우라도 전공과 관련된 분야에 창업을 하는 경우 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허용할 수 있다.
4. 교내·외 창업 관련 입상 또는 선정 실적이 있는 학생

제7조(창업 휴학기간) ① 창업 휴학은 1년 단위로 하며, 재학 중 최대 2년(4학기)까지 휴학할 수 있다.

② 휴학 사유가 창업으로 인한 창업 휴학은 일반휴학 횟수에 산입하지 않는다.

제8조(창업 휴학 신청 및 절차) ① 창업 휴학 신청은 일반휴학과 마찬가지로 학기마다 신청을 할 수 있다.

② 창업기준일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일,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인 설립 등기일을 기준으로 한다.

③ 창업 활동을 목적으로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다음 각호의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일반휴학 신청 기간 1개월 전까지 주관부서에 제출해야 한다.

1. 창업휴학신청서
2. 창업자의 경우 창업관련 서류(창업휴학 사업보고서 및 개인사업자의 경우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)
3. 예비창업자의 경우 창업휴학 사업계획서
4. 기타 심의에 필요한 자료

제9조(승인) ① 위원회에서는 신청서류에 대한 심의를 통해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.

② 주관부서는 창업 휴학 승인 대상자 명단을 일반휴학 기간 내에 학적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제 3 장 창업 대체학점 인정제

제10조(창업대체학점 인정) ① 창업대체학점으로 인정되는 활동은 창업동아리로, 일정 조건 충족 시 학점으로 인정한다.

- ② 창업대체학점은 학생의 전공 분야로 한정하고, 그 이외의 경우 위원회의 심의로 결정한다.
- ③ 창업대체학점으로 인정하는 교과목의 명칭은 '창업실습'으로 한다.
- ④ 재학기간 중 1회에 한하여 학기당 2학점 이내에서 인정가능하며, 1학점당 15시간 이상의 동아리 활동을 해야 한다.

제11조(창업동아리 인정기준) ① 창업동아리 활동이 '창업실습' 교과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호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.

- 1. 주관부서에 등록·관리되는 창업동아리로서 대학의 전임교원이 지도교수로 등록하여 학기별로 10회 이상 지도해야 한다.
- 2. 창업동아리는 최소 2인 이상의 학생으로 등록된 경우여야 한다.
- 3. 사업계획서 및 시작품과 같이 창업동아리 활동을 평가할 수 있는 구체적 결과물의 제출과 평가가 가능한 경우여야 한다.
- 4. 창업동아리 활동기간 동안 창업역량강화 프로그램(비교과프로그램) 이수, 교내 창업경진대회 등에 참여하여야 한다.

제12조(신청 및 신청절차) ① '창업실습' 교과를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학기 개시일 1개월 전까지 본교에서 정한 신청서를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창업교육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위원회는 심사를 통해 적격 여부를 판단하여 학기 개시일 15일 전까지 교무과에 과목 개설을 요청한다.

제13조(성적평가와 학점인정) ① 학생은 학기종료 3일 전까지 성적처리를 위해 다음 각호의 서류를 지도교수에게 제출해야 한다.

- 1. 창업동아리 활동일지 (10회 이상)
 - 2. 창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이수 및 교내·외 창업경진대회 참가 등의 활동 증빙 서류
 - 3. 창업실습 종합보고서
- ② 지도교수는 학기 종료일까지 전 항의 서류를 평가한 뒤 성적인정 평가서를 작성하여 전 항의 서류와 함께 주관부서에 제출한다.
- ③ 위원회는 지도교수의 성적인정 평가서를 바탕으로 창업 대체학점 인정에 대한 적격 여부를 승인한다.
- ④ 주관부서는 성적입력 기한내에 위원회의 승인여부를 지도교수에게 통보하고, 지도교수는 승인된 성적을 입력함으로써 학점인정절차를 완료한다.
- ⑤ '창업실습' 교과목의 성적은 이수 P(Pass), 미이수 F(Fail)로 평가한다.

제14조(지도교수 시수 인정 및 업적평가 반영) ① '창업실습' 교과 지도교수의 교육 시수는 주당 1

시수로 인정한다.

② 지도교수에게는 교원업적평가기준에서 정한 비에 따라 업적평가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